

(재)백영장학재단 공고 제2017-1호

재단법인 백영장학재단
제3회 백영장학생 선발계획 공고

재단법인 백영장학재단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,
제3회 백영장학생 선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2월 17일

재단법인 백영장학재단 이사장

- 아 래 -

□ 장학생 선발개요

- 공고 및 접수 기간 : 2017년 2월 17일(금) 오전9시 ~ 2월 26일(일) 자정12시까지
- 선발심사 : 2017년 3월
- 확정통보 : 2017년 3월
- 장학생 선발분야 : 성적우수장학금, 모범생장학금, 생활비지원장학금 (3개 분야)
- 장학생 추천권자 : 학교장 등 소속 교육기관장

□ 장학생 선발인원 : 00명 (고등학생 00명, 대학생 0명, 대학원생 0명)

□ 장학금 종류 및 신청자격

○ 공 통

- ☞ 공고일 기준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(대학교, 대학원 포함)에 재학중인 학생
- ☞ '장학생선발 및 장학금 지급규정'의 장학금 지급중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학생

○ 성적우수 장학금

- ☞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교 이상의 학생(대학생·대학원생 포함)으로서 학교장 등 소속 기관장(대학교·대학원은 학과장)의 추천을 받은 학생
- ☞ 학업성적 판단기준

- ◎ 고등학생 : 2016년도 2학기 성적이 상위 30% 이내인 학생
 - ※ 신입생의 경우 중학내신이 상위 30% 이내의 학생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
- ◎ 대학생 : 2016년도 2학기 성적이 3.5/4.5 이상인 학생
 - ※ 신입생은 2016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상위 30% 이내로서 대학교에 등록한 학생

○ 생활 모범생 장학금

- ☞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 타에 모범이 되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생(대학생·대학원생 포함)으로서 학교장 등 소속 기관장(대학교·대학원은 학과장)의 추천을 받은 학생
- ☞ 가정형편 판단기준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

○ 생활비 지원 장학금

- ☞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교 이상의 학생(대학생·대학원생 포함)으로서 학교장 등 소속 기관장(대학교·대학원은 학과장)의 추천을 받은 학생
- ☞ 학업성적 판단기준(성적우수 장학금 기준과 동일)

□ 신청방법

- 각급 학교 및 교육기관 장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·교사, 학생, 학부모가 신청
 - ※ 신청서류는 (재)백영장학재단 홈페이지(baekyoungfoundation.com) 게시판에 게시
- 접수처 : 백영장학재단 사무국 (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 56 백영성수센터 1301호)

※ 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접수기간 마감시까지 백영장학재단 사무국에 제출(우편은 도달)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하며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○ 신청서류

구 분	성적우수장학금	모범생장학금	생활비지원장학금	구 분
공 통	⇨ 장학금 지원 신청서			재단서식
	⇨ 추천서 (학교장 등 소속 기관장의 날인)			재단서식
	⇨ 2016년 2학기 성적 증명서 ※ 고등학교 신입생은 중학교 3학년 성적 증명서를, 대학·대학원 신입생은 2016년 수능성적 통보서 제출			
	⇨ 재학증명서 ※ 신입생은 등록확인서 등 재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			
	⇨ 주민등록등본			
	⇨ 타 장학금 수혜(비수혜) 확인서			재단서식
	⇨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사본			
	⇨ 서약서			재단서식
	⇨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조화·제공 동의서			재단서식
개 별		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		

□ 장학금 지급계획

- 장학증서는 제3회 백영장학생 후원의 날 행사 개최시 수여 : 2017년 3월 예정
- 장학금은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예금계좌로 입금
- ‘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규정’에 규정한 장학금 지급중지사유 발생 및 확인시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함.

※ 장학금 지급중지사유 (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규정 제9조)

1. 학교에서 징계처분(정학·퇴학)을 받은 때
2. 한 학기 이상 휴학한 때
3. 장학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
4. 다른 장학회의 장학금을 받고 있음이 판명되었을 때
5. 기타 사유로 학교장의 중지 요구가 있을 때